기계류 임대차(리스)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기계(이하 본계약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계약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갑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 제2조(기간 및 자동갱신)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20〇〇년 〇월 〇일까지로 한다. 기간만료일로부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3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1월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1년씩 갱신된다.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전 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인도방법 및 의무) ①갑은 본계약기계를 20〇〇년 〇월 〇일까지 갑과 을이 협의한 장소에서 또는 계약당시 본계약기계가 있는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한다. 본계약기계의 인도시 갑은 기계의 현재상태, 작동성능, 조작방법, 수리방법등에 관한 설명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 ②을은 본계약기계를 인도 받은 즉시 기계의 현재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을이 부담한다.
 - ③전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4조(책임) ①갑은 을로부터 전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본계약체결 후 6월 내에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본계약기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계약기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진다.
 - ②전항의 하자에 대하여 을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료의 감액이외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갑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본계약기계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성능저하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본계약체결 후 본계약기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 을이 부담한다. 단 그 손해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갑 또는 을 중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쌍방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는 갑과 을 은 반분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5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본계약에 대한 손해의 담보로써 금 ○○○원을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임료)** 을은 본계약기계의 사용대가로 매월 금〇〇〇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료의 지급기한은 매 익월 1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임료의 감액) ①을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하자의 통지를 갑에게 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임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을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본계약기계의 하자로 손해를 입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실손해에 상응하는 임료의 감액을 문서로써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료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임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이 진다.
- 제8조(금지행위) 을은 본계약기계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의 설정, 양도 및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 제9조(계약의 해제) ①갑과 을은 쌍방이 본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하며 해제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 ②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갑과 을은 서로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을은 본계약기계를 인도받은 후 ○일 이내에 본계약기계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 제12조(준거법, 관할) 민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준거법은 갑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으로 하며 법원의 관할은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갑과 을은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0년 0월 0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mark>주민등록번호 _ 전 화</mark> 번 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mark>주민등록번호 전화</mark> 번호

[별 지]

기계목록

품 명	수 량(개)	제작회사	고유번호
전기용접기	5	000	000
산소용접기	5	000	000
그라인다	2	000	000